

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8월 6일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처분대상

업체명 (대표자)	등록업종 (등록번호)	영업소 소재지	처분내용 (처분일)	처분근거
주식회사건화이앤씨 (류재호)	구조물해체·비계공사업 (인천서구2023-사-05)	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53번길 44-28 201호 (석남동)	시정명령 (2024. 8. 6.)	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(건설공사대장 미통보)

2. 시정내용 : 건설공사대장을 2024. 9. 26.(목)까지 발주자에게 통보

3. 공고장소 :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

4. 공고기간 : 2024. 8. 6. ~ 2024. 9. 26.

5. 기타사항

가.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나.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로과(☎560-4484)로 문의바랍니다.